

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

신용보증기금+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프로그램

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
대출 실행 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



주요 보증혜택



보증실행시 **최초 3년간**
보증비율 **100% 적용**



기업별 **보증료율**에서
0.2%p 감면

* 단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용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보증지원이란?

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

1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 세부 기준

1) 신용보증기금

개인 및 법인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등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* 대상 기업

-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, 법인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업종 단, 대기업은 제한되며,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

2) 기술보증기금

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공단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,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* 중소기업 (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)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등록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2 지원 대상 공단 사업

사 업 명	지원 대상	지원 가능기간
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 MS)	인증기업	인증일로부터 3년
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	참여기업	익년도 1년 (1.1~12.31)
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, 확인심사	적합판정기업	
위험성평가	인정기업	3년 (인정기간 종료시까지)
안전신기술 스타트업 육성	수상기업	수상일로부터 3년
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	선발기업	선발일로부터 3년 (예비 포함)

예 시

-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정일이 '21.5.13.이라면 '24.5.12.까지 신청가능
- ② '21년도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'22년도 1월~12월 보증신청 가능
- ③ '21년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, 확인심사 적합판정 기업은 '22년도 1월~12월 보증신청 가능
- ④ '21.5.13.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유지기간인 '24.5.12.까지 보증신청 가능
단, 지원 가능기간이라도 사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⑤ '21.6.4. 안전 신기술 공모전 수상기업 및 안전 인큐베이팅 선발 사회적 기업은 '24.6.3.까지 보증신청 가능

3

사업진행 절차



☑ 신용보증기금



보증신청 및 상담

-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
- www.sinbo.or.kr
- 영업점 방문상담, 전화상담 등
- 대표전화 1588-6565



자료수집 및 조사

-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



보증심사 및 승인

-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
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,
승인여부 결정



보증서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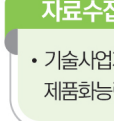
- 보증약정 체결
- 전자보증서 발급
- 보증료 수납

☑ 기술보증기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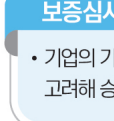
보증신청 및 상담

-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
- www.kibo.or.kr
- 영업점 방문상담, 전화상담 등
- 대표전화 1544-11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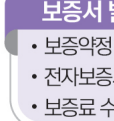
자료수집 및 조사

- 기술사업계획서 검토, 기술개발능력,
제품화능력 등 조사



보증심사 및 승인

- 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 등을
고려해 승인여부 결정



보증서 발급

- 보증약정 체결
- 전자보증서 발급
- 보증료 수납

➤ 보증서 발급 소요기간

- 서류접수 후 현장조사일 (본평기일) 로부터 약 4~6일 소요

➤ 보증료 산정

-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
-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, 보증금액, 이용기간,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
- 동 사업대상 안전경영활동 우수 제조기업은 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.2%p 감면 *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

➤ 유의사항

- 기업 신용 및 경영상태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원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음
- 각 사업별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금융기관 여신 실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지원

보증지원 제한기업 사례 예시



☑ 신용보증기금

- 01 휴업중인 기업
- 0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
- 0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
- 0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(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)
- 05 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~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- 0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
 - ㉠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
 - ㉡.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 - ㉢.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- 0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㉠.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
 - ㉡.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 - ㉢.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
- 08 위 제7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- 09 허위자료 제출기업
- 10 신보, 기보,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(사고)기업

☑ 기술보증기금

- 01 휴업중인 기업
- 02 채무관계자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기업
- 03 기업, 대표자, 실제경영자, 주력기업이 신용 관리 정보대상자
- 04 파산·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있거나 청산 들어간 기업
- 05 대출금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
- 06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
- 07 기금,신보,재단 보증사고 기업
- 08 기금 사고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
- 09 기금·신보·재단에서 채권변제 받지못한 기업
- 10 9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, 업무집행사원, 대표(공동경영자 포함), 실제경영자가 대표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11 9호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12 기보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기업
- 13 기보 보증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기업
- 1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

※ 상기항목들은 보증진행불가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지점에서 상담 후 보증지원 여부가 결정됨.

안전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 혜택은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협약 종료 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